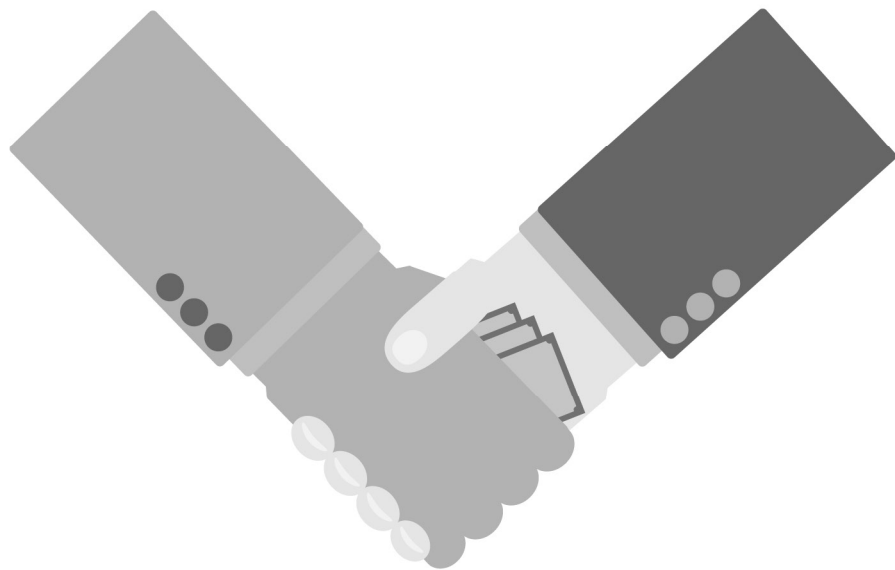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 실태조사 등 관련 간담회

- 일시 : '19. 1. 23.(수), 14:00~16:00
- 장소 :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 실태조사 등 관련 간담회

□ 추진배경

- 반기별로 실시하는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기관의 협조 독려, 위반 신고 처리 내실화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9. 1. 23.(수), 14:00~16:00 /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 참석대상 : 운영 현황 실태조사 자료 취합 감독기관(90여개), 자료 작성 기관 중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공운법상 공공기관(338개)의 청탁방지담당관, 신고처리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청탁금지제도 운영 방향 공유, 법 위반 신고 처리 사례 설명, 운영 현황 실태조사 자료 관련 안내, 의견청취 등

□ 세부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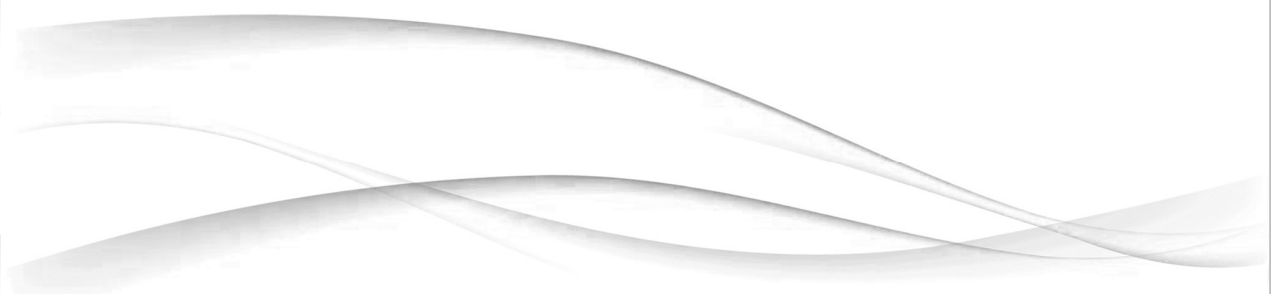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참석자 등록 및 안내	청탁금지제도과
14:05~14:25	20'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 설명	청탁금지제도과
14:25~14:45	20'	신고 처리 사례 관련 설명	청탁·부패조사처리팀
14:45~14:55	10'	신고 처리 관련 질의응답	참석자
14:55~15:25	30'	실태조사 자료 작성 방법 안내	청탁금지제도과
15:25~15:50	25'	실태조사 관련 질의응답, 의견청취	참석자
15:50~16:00	10'	설문지 작성 및 폐회	청탁금지제도과

□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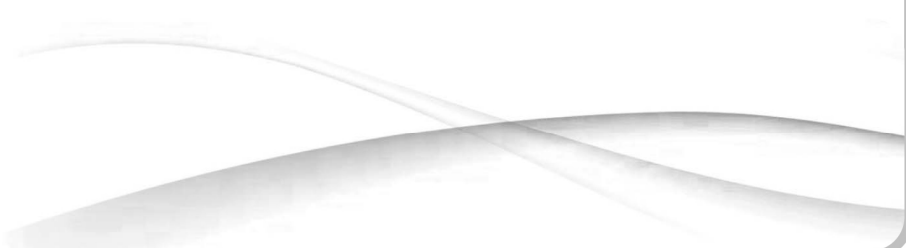
- 상시학습 : 참석자 2시간 인정(각급기관 참석자 통보 예정)

CONTENTS

1. 2019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 1
2. 사례를 통한 청탁금지법의 이해 7
3.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 작성요령 23



1. 2019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



2019 청탁금지제도 주요 운영 방향



추진 방향

권익위

- ✓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 ✓ 법령·규정 개선

사각지대 해소

각급기관

- ✓ 철저한 신고처리
- ✓ 내부신고 활성화

내실 있는 운영

국민·공직자등

- ✓ 법 공감대 확산
- ✓ 교육·홍보 확대

청렴문화 정착

추진 과제 1. 각급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

· 신고처리 현황 실태조사와 현지점검

- 반기별로 조사, 부적절 처리 사례 발생 기관은 현지점검 실시

〈각급 공공기관 신고 처리 현황(‘16.9.28.~’18.6월)〉

신고접수	총 11,805건(부정청탁 2,490건, 금품수수 1,512건, 외부강의 7,803건)		
기관조치 현황	과태료 통보	283건	459건
	수사의뢰	176건	
처벌 현황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144건	167건
	형사처벌	23건	

· 교육을 통한 신고처리 내실화

- 청탁방지담당관 간담회·워크숍을 통한 유의사항 공유
- 법 위반신고 처리 매뉴얼 등을 통한 일반적 처리기준 안내

추진 과제 1. 각급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

· 제재 미실시 사례 등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금품 수수 공직자(국가·지방공무원)에 대해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로 인한 제재 불균형 사례 방지 방안 마련
- 자진신고 시 금품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양벌규정 미적용 등 부실 제재 기관명 공개

· 부정청탁 신고 등 조치결과에 대한 공개 유도

-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에 부정청탁 주요내용·조치결과의 공개 (법 제7조제7항) 여부를 반영

추진 과제 2.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 청탁·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한 취약분야 발굴·개선

- 제재·처벌보다 법령·기준 정비를 위한 예방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
- 질의 빈발 분야, 취약분야 등에 대한 해석기준 보완

· 취약분야 제도보완 대책 이행 독려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른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보완 대책 완료(’19.6월) 및 이행(연중)

· 질의 빈발 분야 등에 대한 해석기준 보완

- 신규업역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범위 등 쟁점 분야, 반복질의 및 자주 오해하는 사안 등에 중점

추진 과제 3.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기준 확립

·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공직 환경 조성

-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안 관련 대책을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반영하여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예시) 감사·감독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대응 반영

· 공공기관과의 법 시행 공감대 확산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법 위반신고 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 컨설팅 및 청렴연수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지원 확대
- 워크숍·간담회를 통한 제도 운영에 관한 소통 강화(’19년 총9회)

추진 과제 4. 일상생활 속에 청탁 없는 문화 정착

· 법의 긍정적 성과 및 인식 변화 적극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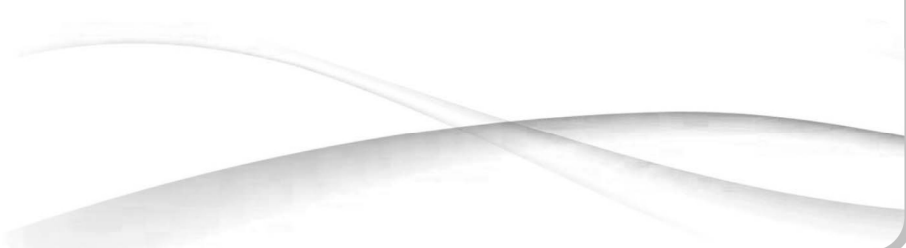
- (국민) 더치페이 증가, 법 시행 이후 행태 변화 등 긍정적 성과 홍보
 - ※ 국민 83%, 공무원 90%가 법 시행 후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한국리서치, '18.9월)
- (시민사회 등)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청렴정책 논의

· 법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규범력 제고

- 유권해석 사례집('18.11월),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통한 유권해석 사례 공유('19.상반기, 1만9천여건)



2. 사례를 통한 청탁금지법의 이해



사례를 통한

청탁금지법의 이해



강사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탁·부패 조사처리팀』
-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 조사 및 이행실태 점검 등 약 150회

☎ 044-200-771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장을 확인하며 느낀점

- 나쁜 행위 ≠ 위법한 행위, 위법 행위자 ≠ 나쁜 사람
- 청탁방지담당관이 나쁜 사람의 위법한 행위를 벌하고, 선량한 공직자를 위법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다.

사 례 A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필요사례 ①

피신고자1,2는 ○○군 ○○센터의 센터장 및 센터원(지방공무원)이다.
 피신고자1,2는 '00. 12.경 공로연수예정인 센터원A(지방공무원)의
 퇴직기념품(황금열쇠 및 케익 등) 구입 등의 명목으로
 센터 공무원 25명에게 1인 12,000원을 요구하여 수수한 의혹이 있다.

- 요구 행위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제8호 예외사유 해당 하지 않음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필요사례 ①

사건을 주도한 피신고자2가 1년간 휴직 후 복직하였던 점, 소속기관의
 청탁금지법 교육이 '00. 3월경 실시된 후 '01. 12월에 계획되었던 점,
 피신고자들의 교육 참석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등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였다면 ...
- 피신고자들이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등에게 퇴직기념품 구입을
 위한 각출에 대하여 한번만 문의하였다면 ...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필요사례 ②

피신고자1 내지 5는 ○○공단 ○○지사 검사관들이다.

피신고자1 내지 3은 '00. 9. 10. 인허가를 신청한 A업체에 점검을 나가
A업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B업체의 직원으로부터
○○한정식에서 개인당 2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피신고자4 내지 5는 같은 날 C업체에서 D부서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한정식에서 동일한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필요사례 ②

A업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B업체가 A업체에 대한 ○○공단의
점검사항을 대행하였던 점, 식사를 제공한 B업체 직원 및 C업체 D부서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던 점, 식사장소인 ○○한정식이 지역
접대장소로 널리 알려진 고급 음식점 이었던 점, 당일 점검을 나간 2개
지역 검사관 전원이 같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시

-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등이 직무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교육을
하고, 평소 예견되는 위반 유형에 대한 주의 또는 관심을 가졌다면 ...

사 례 B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①

피신고자1은 ○○대학 교무담당자이며, 피신고자2는 교무과장이다.
피신고자1은 '00. 5. 25. 피신고자2외 3명(직장선배 2명, 여자친구)과
함께 자신의 생일 기념 명목으로 2차에 걸쳐 식사 및 음주를 하며,
156,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피신고자2에게 약 36,230원의 금품등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①

1. 직무관련성

피신고자1은 ○○대학 인사명령을 통해 '00. 6. 1.부로 교무과 교무담당으로 보직 변경이 확정되어, '00. 5. 23.경 부터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중이었으며, 피신고자2는 교무과장으로 피신고자1의 전·후반기 근무평정권을 행사하게 되고, 평소 업무를 지시·통제하는 위치이기에 피신고자1,2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①

2. 수수금품 가액 산정

피신고자2는 사건이 공론화되자 저녁식사 다음날 피신고자1에게 현금으로 일부 비용을 정산해 주었다가 주장하였으나, 사건 초기 소속기관에서 수리한 피신고자1,2의 자필진술서에 관련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신뢰할 수 없었음

동료2로부터 “1차 식사장소에 늦게 합류하였으나 식사가 끝난 뒤였으며, 바로 2차 음주장소로 이동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개인별 식사가액을 산정함 (1인 36,230원)

– 동료2가 1차에 동참한 경우 식사가액 3만원 이하로 예외사유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①

3. 상호접대에 따른 상계 여부

피신고자2는 '00. 5. 25. 점심시간에 피신고자1의 생일을 기념하여 부서원들과 피신고자1에게 탕수육과 짜장면 등을 사주었기 때문에 상호접대에 따른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의 상호 접대에 따른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피신고자1,2가 계산하였던 점심과 저녁식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았고 참석자가 달랐던 점 등을 볼 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로도 보기 어려움.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①

4.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예외사항 해당 여부

피신고자 1,2의 '00. 5. 25. 저녁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이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30,000원을 초과하였기에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①

5. 법 제8조 제3항 제8호 해당 여부

피신고자1이 자신의 생일 기념으로 피신고자2가 점심을 사주어서 저녁을 접대하였다고 진술한다 하더라도 피신고자2가 계산한 점심 자리의 참석자가 동일 부서의 부서원들이었으나, 피신고자1이 계산한 저녁식사 자리의 참석자는 여자친구, 친한 선배, 업무 전임자, 피신고자2 등이었고,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가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초청한 정황이 있으며, 부서원들이 1~2년 주기로 수시 인사 이동하는 특성상 부서원이 생일 기념으로 식사를 접대하는것이 관례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시 위 행위가 공직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관례나 사회상규라고 볼수 없음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①

6. 위원회 심사 의견

피신고자1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피신고자2에게 1,2차에 걸쳐 36,23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의혹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신고자2는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를 위해 감독기관인 ○○부로 이첩

7. 조사기관에서는 조사 후 소속기관에 과태료 부과 요청토록 통보

8. 소속기관에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①

9. 관할 법원의 판단

당시 피신고자1이 겸직 업무중으로 피신고자들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신고자1,2가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상호 주고받아 친목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탁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소속기관의 의견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②

피신고자1은 ○○시청 민원봉사과장이고, 피신고자2 내지 21은
○○시청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이다. 피신고자1은 '00. 12. 19.경
피신고자2 내지 21로부터 '01. 1. 1부 공로연수에 따른 퇴직기념 선물
명목으로 980,000원 상당의 금열쇠 1개와 20,000원 상당의
꽃다발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2 내지 21은 50,000원씩
각출하여 피신고자1에게 위 금열쇠 및 꽃다발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②

1. 직무관련성

○○ 시청의 '00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계획에 따라 12. 15. ~ 30.
피신고자2 내지 21은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입력하였고,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 내지 21을 포함한 민원봉사와 일반직21명에
대한 평정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때 피신고자1과 피신고자2
내지 21의 직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②

2. 금품가액 판단

피신고자2 내지 21이 각자 자신의 자금으로 50,000원씩 냈다
하더라도 '00년 12월 중순경 주무 회의시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1,000,000원을 모금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금품가액은 1,000,000원으로 판단됨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②

3. 법 제8조 제3항 제8호 해당 여부

과에서 재직중이던 일반직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직원들이 각출하여 퇴직기념선물을 전달해온것이 관행이었다하더라도 이 법 제정 취지가 상급자에게 98만원 상당의 금열쇠를 선물하는 행위를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지않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수 있는 행위로도 보여지지 않으며,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전보되므로 재직 하위 직원이 장래에 동일한 퇴직선물을 받을 수 없고, 하급직원들은 조직분위기로 인해 사실상 자유의사에 관계없이 각출할수밖에 없는 반강제성이 있으며 직원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볼 때 공직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관례이거나 사회상규라고 볼 수 없음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②

4. 위원회 심사 의견

피신고자1이 '00. 12. 19. 직무관련자인 피신고자2 내지 21이 5만원씩 각출하여 마련한 금열쇠 1개 98만원과 꽃다발 2만원 등 총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신고자2 내지 21은 위 금품을 제공하여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피신고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감독기관인 ○○도로 이첩

5. 조사기관에서는 조사 후 소속기관에 과태료 부과 요청토록 통보

6. 소속기관에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금품수수 확인 사례 ②

7. 관할 법원의 판단

피신고자1의 공로연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금원을 각출하여 퇴직기념품을 마련한점, 기념품의 제공시기가 피신고자1의 직무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으로 보이는 점, 피신고자1이 기념품을 마련하는데 누가 참여하고 얼마씩 각출하였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이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시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V

맺음말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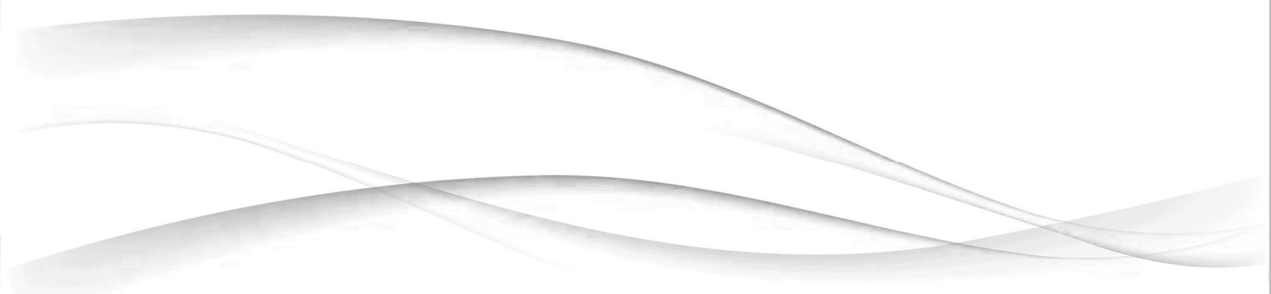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쁜 사람의 위법한 행위 처벌 !!!
선량한 공직자는 위법하지 않게 보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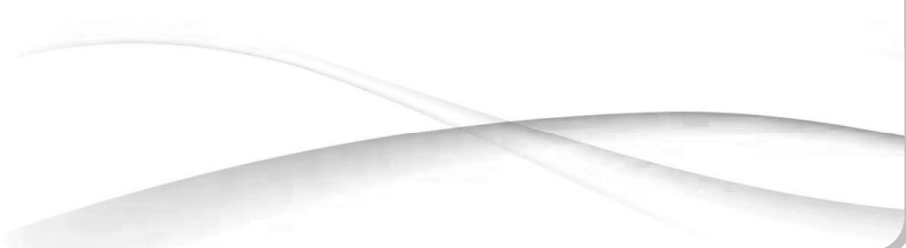
**청탁방지담당관이
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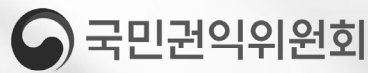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3.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 작성요령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 작성요령



법적 근거 및 목적

청탁금지법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소속기관과 감독기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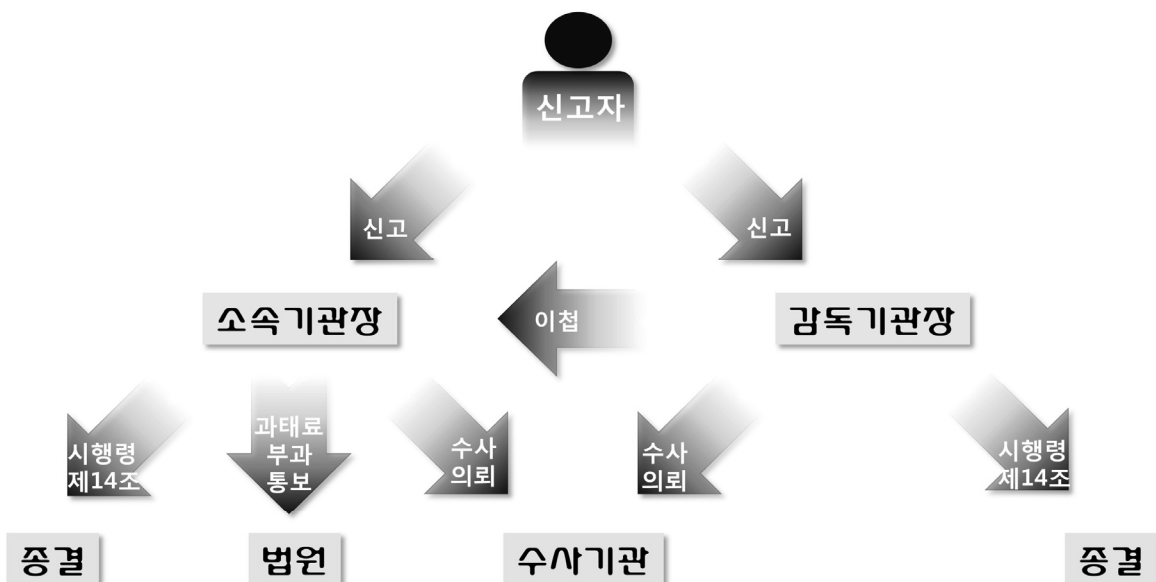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소속기관 = 공공기관

소속기관과 감독기관(2)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연번	기관유형	기관제부유형	기관명
작성 요령	중앙행정기관 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의외, 기초의외,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중 선택	학교, 언론사 등 기관별 제부유형이 있는 경우 작성 * (사립/공립)학교의 종류 * 언론사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의 종류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명+기관명으로 제출 *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본부 (본청) 연왕에 포함되어 제출

청탁금지법 교육횟수	청탁금지법 상담횟수	공직자등 연왕('18.12.31. 기준)
2018년에 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청탁금지법 교육횟수 (숫자만 기재)	2018년에 청탁방지 담당관이 소속직원과 실시한 상담횟수 (숫자만 기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의 정원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청탁방지담당관 연왕				업무담당자 연왕			비고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작성요령 및 예시는 제출시 삭제

위반신고 총괄표 감독기관용(1)

기관유형	기관명	신고 접수연왕					
		소계	부정청탁 (자진신고)	부정청탁 (3자신고)	금품수수 (자진신고)	금품수수 (3자신고)	외부강의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중 선택 * 소속직원이 아닌 공직자등에 대한 위반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연왕을 작성		(공통사항) * 각 연왕의 소계 일치여부를 확인할 것 * 신고 접수연왕과 기관 조치연왕 등은 건수 기준으로 작성하고, 위반신고 안전에 두가지 이상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수사의뢰', '타기관이첩', '종결' 순으로 분류 * 외부강의 접수연왕은 정상적인 외부강의 사전신고가 아닌 사전사우 미신고, 초과사례금 미신고, 반환의무 위반 등 위반연왕을 작성 *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분류아되, 신고자보호 등의 사유로 자진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3자신고'로 분류 * 수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위해 이첩받은 경우는 접수연왕에 포함 시키되, 단순 사건게시통보를 받은 경우 신고접수 연왕에서 제외할 것					

위반신고 총괄표 감독기관용(2)

신고접수 기관 조치연왕					
소계	조사·수사중	수사의뢰	타기관이첩/송치	기소	종결
기관에서 처리한 연왕 작성	감사원, 감독기관 에서 조사중, 수사기관에서 수사중,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수		타 기관에 이첩한 경우 타기관이첩(기관명) 으로 작성 (예시) 타기관이첩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조사 결과 종결한 건수

수사·재판 결과				
소계	수사중	재판중	영사처벌	무죄판결/불기소처분
법원에 기소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연왕 작성				

위반신고 총괄표 소속기관용(1)

기관유형	기관세부유형	기관명
중앙행정기관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의외, 기초의외,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중 선택	학교, 언론사 등 기관별 세부유형이 있는 경우 작성 (예시) * (사립/공립)학교의 종류 * 언론사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의 종류	* 타기관에서 위반사건을 통보받아 처리한 경우 처리한 기관명 작성 (예시) XX시가 행안부 또는 경찰청으로 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아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한 경우 'XX시'로 제출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명+기관명으로 제출 * 소속기관 연왕은 본부(본청) 연왕에 포함하여 제출

위반신고 총괄표 소속기관용(2)

신고 접수연왕					
소계	부정청탁 (자진신고)	부정청탁 (3자신고)	금품수수 (자진신고)	금품수수 (3자신고)	외부강의
(공통사항) * 각 연왕의 소계 일치여부를 확인할 것 * 외부강의 접수연왕은 정상적인 외부강의 사전신고가 아닌 사전사우 미신고, 초과사례금 미신고, 반환의무 위반 등 위반연왕을 작성 *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분류아되, 신고자보호 등의 사유로 자진신고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자신고'로 분류 * 수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위해 통보받은 경우는 접수연왕에 포함시키되, 단순 사건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신고연왕을 제출할 사항이므로 신고접수 연왕에서 제외 할 것					

위반신고 총괄표 소속기관용(3)

기관 조치연왕					
소계	조사증	수사의뢰	과태료 통보	타기관이첩	종결
기관에서 처리한 연왕 작성	접수받은 신고를 조사증인 건수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한 건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안 건수	타 기관에 이첩한 건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조사 결과 종결한 건수

수사재판 결과					
소계	수사증	재판증	과태료부과	영사처벌	종결
법원, 수사기관에 과태료부과요청 및 수사의뢰한 연왕 작성	과태료부과요청, 수사의뢰한 건이 수사증인 건수	과태료부과요청, 수사의뢰한 건이 재판증인 건수	법원에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건수	법원에서 위반자에 대해 영사처벌 안 건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과태료 불처벌 결정 등 수사·재판 결과 종결된 건수

징계결과	
징계연왕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처분 건수 작성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건수 작성

부정청탁 위반 신고현황 감독기관용(1)

연번	기관유형	기관명	신고유형	신고일자
(작성요령) 피신고자가 여러명인 경우 아워연번을 추가하여 작성 (예시) 1 1-1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중 선택 * 소속직원이 아닌 공직자등에 대한 위반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연왕을 작성		자진신고, 제3자신고 중 선택 * 위반행위를 자체적발한 경우 '제3자신고'에 포함 * 타기관으로부터 이첩 받거나 수사익리 받은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분류 아되, 신고자보호 등의 사유로 자진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3자신고'로 분류	YYYY-MM-DD 양식에 맞춰서 작성 (예시) 2017-07-01 (작성 오류 예시) 2017.7.1. '17.1.1.

부정청탁 위반 신고현황 감독기관용(2)

사건내용	청탁자 등	청탁자 등 소속기관	청탁유형
(신고내용) - 신고자가 신고서에 작성한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작성 (확인·처리내용) - 청탁방지담당관이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한 결과를 작성	최소청탁자, 중간청탁자, 직무수행자로 구분하여 작성 (예시) A가 B를 통해 C에게 인어가 부정청탁을 하여 C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우 최소청탁자A, 중간청탁자B, 직무수행자C로 작성 중간청탁자가 없는 경우 생략		청탁금지법 제6조, 제5조 제1항 제1~14호 중 청탁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유형을 선택

기관 조치연왕	수사·재판 결과	사건번호	비고
조사·수사중, 수사익리, 타기관이첩/송지(기관명), 기소, 종결(종결조항) 중 선택 *종결한 경우 시행령 제14조 (종결처리 등)에서 해당하는 조항을 선택하여 작성	수사중, 재판중, 영사처벌(징역XX개월, 벌금XX만원), 무죄판결/불기소처분, 해당없음 중 선택 *기관조치 결과가 조사중, 종결, 타기관이첩인 경우 '해당없음' 선택	법원 사건번호 작성 (예시) 수원지방법원 2016과21	작성요령 및 예시는 제출시 삭제

부정청탁 위반 신고현황 소속기관용(1)

연번	기관유형	기관세부유형	기관명	신고유형	신고일자
(작성요령) 피신고자가 여러명인 경우 아워연번을 추가하여 작성 (예시) 1 1-1	중앙행정기관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중 선택	학교, 언론사 등 기관별 세부유형이 있는 경우 작성 (예시) * (사립/공립)학교의 종류 * 언론사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의 종류	* 타기관에서 위반사건을 통보받아 처리한 경우 처리한 기관명 작성 (예시) 00도 XX시가 영안부 또는 경찰청 으로부터 위반 행위를 통보받아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한 경우 '00도 XX시'로 제출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명+기관명으로 제출 * 소속기관 연왕은 본부 (본청) 연왕에 포함되어 제출	자진신고, 제3자신고 중 선택 *위반행위를 감사부서 등에서 자체 적발 한 경우 '제3자신고'에 포함 *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분류하되, 신고자 보호 등의 사유로 자진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3자신고'로 분류	YYYY-MM-DD 양 식에 맞춰서 작성 (예시) 2017-07-01 (작성 오류 예시) 2017.7.1. '17.1.1.

부정청탁 위반 신고현황 소속기관용(2)

사건내용	청탁자 등	청탁자 등 소속기관	청탁유형
(신고내용) - 신고자가 신고서에 작성한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작성 (확인·처리내용) - 청탁방지담당관이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한 결과를 작성	최소청탁자, 중간청탁자, 직무수행자로 구분하여 작성 (예시) A가 B를 통해 C에게 인어가 부정청탁을 하여 C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우 최소청탁자A, 중간청탁자B, 직무수행자C로 작성 중간청탁자가 없는 경우 생략		청탁금지법 제6조, 제5조제1항 제1~14호 중 청탁의 주요 내용에 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선택

부정청탁 위반 신고현황 소속기관용(3)

기관 조치연왕	수사 · 재판 결과	사건번호
조사증, 수사익리, 과태료 부과요청, 타기관이첩(기관명), 종결(종결요청) 중 선택 * 종결한 경우 시행령 제14조 (종결처리 등)에서 해당하는 조항을 선택 하여 작성	수사증 · 재판증, 영사처벌(징역XX개월, 벌금XX만원), 과태료 부과(X배, X만원), 징계부가금 부과(X배, X만원), 종결, 애당없음 중 선택 * 기관조치 결과가 조사증, 종결, 타기관이첩인 경우 '애당없음' 선택 *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재판 요청 여부를 추가하여 제출 (예시) 징계부가금 부과(2배, 30만원) ※ 과태료재판 요청/미요청	법원 사건번호 작성 (예시) 수원지방법원 2016과21

징계연왕	직무배제 조치여부	조치사항 공개여부	비고
조사증, 징계요청, 징계완료 (징계결과), 애당없음 중 선택 (예시) 징계완료(감봉3월)	청탁금지법 제7조에 따른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조치사항 없음 중 선택	공개(공개위치), 미공개, 애당없음 중 선택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등 공개 여부 작성	작성요령 및 예시는 제출시 삭제

금품수수 위반 신고현황 감독기관용(1)

연번	접수기관유형	접수기관명	신고유형	신고일자
(작성요령) 제공사 · 수수자가 여러명인 경우 아워 연번을 추가하여 작성 (예시) 1 1-1 1-2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중 선택 * 소속직원이 아닌 공직자등에 대한 위반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연왕을 작성		자진신고, 제3자신고 중 선택 * 위반행위를 자체적발 한 경우 '제3자신고'에 포함 *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수사익리 받은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 여부를 확인 하여 분류하되, 신고자보호 등의 사유로 자진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3자신고'로 분류	YYYY-MM-DD 양식에 맞춰서 작성 (예시) 2017-07-01 (작성 오류 예시) 2017.7.1. '17.1.1.

금품수수 위반 신고현황 감독기관용(2)

사건내용	제공자/수수자	제공자/수수자 소속기관	수수금액 (천원)
(신고내용) - 신고자가 신고서를 통해 신고한 금품수수 주체,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작성 *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통보한 기관 표시 (확인·처리내용) - 청탁방지담당관이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한 결과를 작성	*제공자와 수수자를 구분하여 작성 (예시) A(제공자), B(제공자), C(수수자), D(수수자), E(수수자)	* 제공자가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또는 단체명 작성	* 금액단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숫자와 단위 '천원'만 작성 * 정확한 금액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산액을 작성하고 추산내용을 비고에 별도 작성 * 수수자 명만 수수금액 작성, 제공자 명은 공란으로 제출

기관조치현황	수사·재판 결과	사건번호	비고
조사·수사중, 수사익리, 타기관이첩/송치(기관명), 기소, 종결(종결조항) 중 선택 * 종결한 경우 시행령 제14조 (종결처리 등)에서 해당하는 조항을 선택하여 작성	수사중, 재판중, 영사처벌(처벌결과), 무죄판결/불기소처분, 애당없음 중 선택 *기관조치 결과가 조사중, 종결, 타기관 이첩인 경우 '애당없음' 선택	법원 사건번호 작성 (예시) 수원지방법원 2016과21	

금품수수 위반 신고현황 소속기관용(1)

연번	접수기관유형	기관제부유형	접수기관명	신고유형	신고일자
(작성요령) 제공자·수수자가 여러명인 경우 아워연번을 추가하여 작성 (예시) 1 1-1 1-2	중앙행정기관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의외, 기초의외,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중 선택	학교, 언론사 등 기관별 제부유형이 있는 경우 작성 (예시) * (사립/공립)학교의 종류 * 언론사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의 종류	* 타기관에서 위반 사건을 통보받아 처리한 경우 처리한 기관명 작성 (예시) XX시가 영안부 또는 경찰청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아 법원에 과태료 부과청한 경우 'XX시'로 제출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명+기관명으로 제출 * 소속기관 연왕은 본부(본청) 연왕에 포함하여 제출	자진신고, 제3자신고 중 선택 *위반행위를 감사부서 등에서 자체 적발 안 경우 '제3자신고'에 포함 *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분류하되, 신고자 보호 등의 사유로 자진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3자신고'로 분류	YYYY-MM-DD 양식에 맞춰서 작성/제출할 것 (예시) 2017-07-01

금품수수 위반 신고현황 소속기관용(2)

사건내용	제공자/수수자	제공자/수수자 소속기관	수수금액 (천원)
(신고내용) - 신고자가 신고서를 통해 신고한 금품수수 주체,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작성 *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통보한 기관 표시 (확인·처리내용) - 청탁방지담당관이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한 결과를 작성	* 제공자와 수수자를 구분하여 작성 (예시) A(제공자), B(제공자), C(수수자), D(수수자), E(수수자)	제공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또는 단체명 작성	* 금액단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숫자와 단위 '천원'만 작성 * 정확한 금액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산액으로 작성하고 추산 내용을 비교에 별도 작성 * 수수자 행만 수수금액 작성, 제공자 행은 공란으로 제출

금품수수 위반 신고현황 소속기관용(3)

기관조치연방	수사·재판 결과	사건번호	징계연방	비고
조사증, 수사의뢰, 과태료부과요청, 타기관이첩(기관명), 종결(종결조항) 중 선택 * 종결안 경우 시행령 제14조(종결처리 등)에서 해당하는 조항을 선택하여 작성	수사증·재판증, 영사처벌(징역XX개월, 벌금XX만원), 과태료 부과(X배, X만원), 징계부가금 부과(X배, X만원), 종결, 애당없음 중 선택 * 기관조치 결과가 종결, 타기관이첩인 경우 '애당 없음' 선택 *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재판 요청 여부를 추가하여 제출 (예시) 징계부가금 부과(2배, 30만원) ※ 과태료재판 요청/미요청	법원 사건번호 작성 (예시) 수원지방법원 2016과21	조사증, 징계요청, 징계완료(징계결과), 애당없음 중 선택	

외부강의 위반 신고현황 소속기관용(1)

연번	접수기관 유형	기관세부유형	접수기관명	신고유형	신고일자
작성 요령	중앙행정기관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의위, 기초의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중 선택	학교, 언론사 등 기관별 세부유형이 있는 경우 작성 (예시) * (사립/공립)학교의 종류 * 언론사 : 언론중재법 에 따른 언론의 종류	* 타기관에서 위반사건을 통보받아 처리한 경우 처리한 기관명 작성 (예시) XX시가 영안부 또는 경찰청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아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한 경우 'XX시'로 제출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명+기관명으로 제출 * 소속기관 연왕은 본부(본청) 연왕에 포함하여 제출	사전신고, 제3자신고 중 선택 *위반행위를 감사 부서 등에서 자체 적발 한 경우 '제3자신고'에 포함 *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경우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분류아되, 신고자 보호 등의 사유로 사전신고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자신고'로 분류	YYYY-MM-DD 양식에 맞춰서 작성 (예시) 2017-07-01

외부강의 위반 신고현황 소속기관용(2)

사건내용	조과사례 금액(천원)	피신고자 소속 기관	위반유형
- 강의일자 : - 강의시간 : - 요청기관 : - 위반내용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반환대상 금액)을 작성 * 신고의무위반의 경우 '예당없음'으로 작성		사전사후 신고의무, 조과사례금 신고반환, 신고의무, 조과사례금 중 선택 * 적법한 외부강의 신고를 위반신고로 오인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내용 기준으로 유형선택
- 강의일자 : 2016.09.30. - 강의시간 : 4시간 - 요청기관 : XXXX재단 - 위반내용 : 외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강의를 마친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사전신고함	예당없음	국민권익 위원회	사전사후신고의무

외부강의 위반 신고현황 소속기관용(3)

처리연왕	재판 결과	사건번호	징계연왕	비고
조사중, 과태료부과요청, 종결(종결조항) 중 선택 * 위반사항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결로 작성 (위반유형이 애당없음인 경우 포함)	재판중, 과태료부과(X만원), 과태료불꺼분 결정, 중 선택	법원 사건번호 작성 (예시)수원지방법원 2016과21	조사중, 징계요청, 징계완료(징계결과), 애당없음 중 선택 (예시) 징계완료(감봉3월)	작성요령 및 예시는 제출시 삭제
종결	종결	애당없음	징계완료(견책)	
과태료부과요청	재판중	수원지방법원 2016과21	조사중	

질의 응답 및 건의사항

Memo



Memo



Memo



Memo

